仲裁硏究, 第 23 卷 第 2 號
2013년 6월 1일 발행, pp. 37~54

논문접수일 2013. 5. 5
심사완료일 2013. 5. 9
게재확정일 2013. 5. 22

조정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Active Plan for Integrating Mediation Systems

서 정 일**
Jeong-Il Suh

〈 목 차 〉

I. 서론
II. 조정제도의 기능적 한계
III. 조정제도 운용상 고려사항
IV.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조정, 조정인, 조정-중재(Med-Arb)조항, 대체적분쟁해결제도

---

* 이 논문은 2013. 5. 10. 한국중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학술세미나에 주제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토론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수정, 보완 하였다.

** 극동대학교 중국통상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ICC Korea International Committee, CIETAC, CAA, KLRAC, HKIAC, BANI, ADNDRC Panel of International Arbitrator

Ⅰ. 서 론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방법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 ADR)로서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종래의 사법적 절차에 수반되는 비용적 · 시간적 낭비를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다. ADR은 분쟁의 해결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여 신속 · 편리한 분쟁해결, 분쟁처리과정에 법원개입의 가급적 배제, 절차의 비공개원칙과 분쟁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절차참여, 의사결정의 존중과 변호사역할의 축소, 분쟁당사자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가능 및 실체법적용의 회피와 창의적인 규범의 창조 등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최소한의 비형식적인 분쟁해결절차는 ADR의 진정한 존립근거가 될 수 있으며, 분쟁해결의 효율성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당사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방향으로 종국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ADR의 목적은 법원에서의 사건 폭주와 이에 따른 사건처리의 지연을 막아주고 분쟁해결비용을 줄이며, 분쟁해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요약된다.[1] ADR의 목적과 부합하는 대표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방식은 조정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지니는 이점으로는 조정을 통한 해결 사실이 법원의 공적기록이나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거래에서 조정의 활용가능성은 사업관행이 분쟁의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 질 때 비밀유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므로 이 때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어느 한 정부의 관여 없이 사적으로 해결하기를 선호한다. 근래에 조정이 ADR 제도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당사자간 분쟁해결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3자에 의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중재의 여러 법률적 고려사항이 대두되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2]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점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정의 융통성과 창의성, 조정인의 중립성 및 공정성 여부가 조정의 신뢰성의 근간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조정의 객관적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한 유형으로서 조정의 성격, ADR 제도의 발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 이에 관련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의 내용과 성과를 근간으로 소송을

1) 특허청, "지적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9)", 2009, p.14.
2) 서정일, "*The Main Issue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s in Korea* ", 「중재연구」, 제21권 제2호, 2011. 8, pp.18-21.
3)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는 양병회, "ADR의 활성화를 위한 화해제도의 개선방안", 「인권

대체하는 분쟁해결기능으로서 조정제도 역할의 한계성과 조정방식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범위를 설정하기로 한다.

Ⅱ. 조정제도의 기능적 한계

1. 조정의 효율성 여부

사법제도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ADR은 모든 면에서 비판론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강자가 약자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절차로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조정에 의한 해결이 지니는 한 가지 주요한 장점은 조정을 통한 해결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조정의 개념에서 가장 핵심적 특징은 조정은 제3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협상절차라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조정은 제3자의 도움 하에 이루어지는 협상이라거나 조정은 협상절차의 확장 또는 완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 현재 조정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각 행정기관에서 조정절차를 규율하는 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의 분쟁조정기구와 같은 행정조정제도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마다 분쟁조정기관이 설립되어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서로 역할이 중복되기도 하여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많다.[5] 사적 조정을 통한 일반적 성격의 민간조정이나 ADR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6]. 민간조정의 법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실정이지만 장차 민간조정이나 ADR이 사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진정

과 정의」, 1994. 7, 김상찬, “ADR 기본법의 입법론에 관한연구”, 「중재연구」, 2004. 2, 유병현, “우리나라 ADR의 발전방향”, 「안암법학」, 22호, 2006, 강수미,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반추”,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2006, 정선주, “ADR 통일절차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1권 제1호, 2007. 5, 함영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08. 11, 유병현,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 제13권 제1호, 2009. 5, 김상수, “우리나라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성과와 발전방향”, 「언론중재위원회」, 2008. 에서 공통적으로 재판외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한 유형으로서 조정의 특성과 ADR 제도의 발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4) Christopher W. Moore, “*The Mediation Process: Practical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 ”, 2d. ed. Jossey-Bass Publishers,1996, p.6.

5) 서정일, 「국제상사중재법론」, 두남출판사, 2003.5, pp.22-23.

6) 함영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08.11, pp.34-36.

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민간조정의 이용촉진이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조정의 이용촉진이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간조정의 법적 근거의 확보라고 본다. 이미 입법을 통해 민간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일본의 ADR 촉진법인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7)]

ADR의 특성으로는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성, 절차상의 제약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분쟁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간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간이·신속성, 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경제성 및 실체법적 내지 절차법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유연성을 들 수 있다.[8)] ADR이 현재와 같이 거의 독자적이고 상호 무관한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으로는 본래 목적에 부합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ADR의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판과 ADR의 연계를 통한 처리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은 재판으로 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법원이 ADR로 사건의 처리를 회부하는 방안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다면 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계기라 되리라 확신한다. ADR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ADR 기구에 비하여 민간 ADR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아니하다. 또한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법의 영향으로 민간 ADR 기구의 육성에 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ADR제도에 대해서 단순히 재판보다 유리하다는 장점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재판에 갈음한다는 분쟁처리수단이 오히려 재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재판은 ADR에 갈음하는 분쟁처리수단이라고 치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ADR이 적절한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단순히 간이 · 신속한 처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9)]

2. 제도적 조정제도의 실태

(1) 싱가폴조정센터(SMC) 조정

1) 조정 절차

7) 2007년 4월 1일 시행; 최건호, "일본의 ADR제도",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2006. 5, pp.288-326.
8) 서정일, 「국제상사중재법론」, pp.36-38.
9) 김상수, "우리나라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성과와 발전방향", p.15.

싱가포르조정센터는(Singapore Mediation Centre)는 1997년 분쟁의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조정제도를 발전시키려는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법원 연계조정으로 급속도로 발전 하여 왔다.[10)]

① 싱가포르조정센터(Singapore Mediation Centre)의 조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가 e-mail 또는 서면으로 조정신청
② 조정신청을 받은 SMC는 모든 조정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권유
③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에 동의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정합의서 작성
④ SMC가 당해 분쟁해결에 적합한 조정인 선정
⑤ 당사자들의 관련 서면 및 증거자료를 SMC를 통해 교환, 관련자료의 제출은 조정일 5일전 까지 제출, 조정일에 분쟁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참석
⑥ 도출된 합의안에 따른 합의서 작성, 조정종결

2) 표준 조정 조항

Mediation Clause 1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first be submitted to the Singapore Mediation Centre for resolution by med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ediation Procedure for the time being in force. The parties agree t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in good faith and undertake to abide by the terms of any settlement reached."

Mediation Clause 2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first be submitted to the Singapore Mediation Centre for resolution. The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shall be referred within [No. of days] days from the time they arose, in accordance with the Mediation Procedure for the time being in force, unless any of the parties serve a written notice on all the other parties and the Singapore Mediation Centre stating that it does not agree to submit the matter to mediation. The parties agree to participate in mediation in good faith and undertake to abide by the terms of any settlement reached."

10) 윤지영,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및 싱가포르경영대학 중재과정 연수", 대한상사중재원, 2011.

Mediation-Arbitration (Med-Arb) Clause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Singapore Mediation Centre and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for resolution by med-arb in accordance with the SMC-SIAC Med-Arb Procedure for the time being in force, which procedure is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this clause."

3) 소액조정(Small Case Commercial Mediation Scheme : SCCMS)

SGD 30,000 이하 사건에 적용한다. 그 대상은 미지급 자동차 수리비, 인건 비, 임대료(월세) 관련 사건이 주를 이룬다. 또한 전문 조정인 양성을 위한 조정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1] 조정사건은 Mediation Advisory Clinic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조정비용은 각 당사자가 SGD 160.50(7% GST 포함)을 부담한다. 소액조정 절차는 조정신청인이 SCCMS 신청서를 작성하여 Mediation Advisory Clinic에 제출하면 Mediation Advisory Clinic이 각 당사자와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당사자가 모두 참석이 가능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조정을 개시한다.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조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는 1994년 국제사무국 산하에 지적재산권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를 설치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을 위하여 중재, 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IPO의 조정-중재(Med-Arb) 절차는 조정과 중재가 결합된 형태로서 제3자가 처음에는 조정인의 역할을 하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동일한 중립적 제3자가 해결되지 못한 남은 쟁점에 대해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WIPO의 조정-중재는 파생적 형태의 다양한 ADR 절차를 운영한다. 예를 들면, 조정 후 중재의 경우 조정인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신뢰성을 갖지 못하거나 동일한 중립인에 의해 진행되는 조정중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정과 중재를 각기 다른 중립인에 의해 진행할 수

11) Mediation Strategic Conflict Management for Professionals (SCMP)의 조정교육과정 참조
① 교육 목적 : 조정에 관한 기초 지식 및 조정 기술 교육, 조정인이 가져야할 조정 전략 및 효율적 조정안 도출 방법 교육
② 교육 대상 : 조정 일반 지식 및 조정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 기업 법무 담당자, 조정인이 되고자 하는 자

도 있다. 특히 조정인에 대해 어느 일방이 불만이 있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무국의 적절한 개입으로 조정 후 중재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12)]

(3) 쿠알라룸프지역중재센터(KLRCA) 조정

쿠알라룸프지역중재센터(KLRCA)는 UNCITRAL 조정규칙을 받아들여 제정한쿠알라룸프지역중재센터 2003 조정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조정 당사자는 자유로이 조정인을 선정하거나 쿠알라룸프지역중재센터에 조정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비용은 관리비용과 조정인 수당을 포함하며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쿠알라룸프지역중재센터에 서면으로 조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비용은 등록비(USD 50.00), 보증금(USD500.00), 관리요금(국제중재관리요금의 25%)을 납부하여야 한다[13)]. 조정인 수당은 쿠알라룸프지역중재센터의 디렉터가 분쟁가액, 분쟁의 복잡성, 조정인이 분쟁해결에 소요한 시간 및 기타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기조정(Early Mediation)

법원에서 ADR로 사건을 회부한다고 하면 민사조정과 가사조정 등 판사가 관여하는 일종의 법원부속형 조정과 법원연계형 조정이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법원이 자신에게 부속된 분쟁을 ADR로 회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 3. 15.부터 조기조정 제도를 시범실시 중이다. 조기조정(Early Mediation)은 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또는 본격적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14)] 조정사건을 각 재판부로부터 회부받은 조정담당판사는 ①

12)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중재제도 활성화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2009, p.72.

13) KLRCA 중재비용

Amount in Dispute(USD)	Administrative Costs(USD)1
50,000 이하	500 + 청구액의 3%
50,000 초과 100,000 이하	1,500 + 50,000 초과액의 2%
100,000 초과 500,000 이하	2,500 + 100,000 초과액의 1%
500,000 초과 1,000,000 이하	6,500 + 500,000 초과액의 0.30%
1,000,000 초과 2,000,000 이하	8,000 + 1,000,000 초과액의 0.20%
2,000,000 초과 5,000,000 이하	10,000 + 2,000,000 초과액의 0.15%
5,000,000 초과 10,000,000 이하	14,500 + 5,000,000 초과액의 0.10% (단, 최대 USD30,000을 초과하지 아니함)
10,000,000 초과 50,000,000 이하	
50,000,000 초과 80,000,000 이하	
8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100,000,000 초과	

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에게 조정사건을 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민사조정법 7조 2항), ②비상임조정위원[15] 또는 ③외부조정기관[16]에 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필요한 조사를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 법원연계형 조정에 관한 지적으로서 구체적인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제도의 선택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제소당시에 쟁점이나 증거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건수가 많게 되면 법관이 사건에 대한 조정적합성의 실험적 분석 없이 가능한 한 많은 사건을 조정에 끌어들여 실적위주의 운영을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7]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 재판부가 직접 하는 조정(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수소법원 조정)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조정제도가 판결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서 나아가 재판대체적 또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 주도형 조정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조기조정에서는 조정위원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조정위원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함으로써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고, 조정위원 주도적 조정, 신속한 조정, 맞춤형 조정 추구(mediator-initiated, fast, tailored mediation)가 가능하다. 조정위원과 분쟁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게 됨으로서 합의율과 절차만족도가 제고된다. 조정위원은 사무수행 보고서만 제출하고 조정절차상 대화내용을 본안재판부에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조정비밀유지 원칙(confidentiality)을 실현하고, 이에

14)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의 '사건처리방향 결정 방법'에 의하면 참여사무관등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심사하면서 조정회부가 상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답변서를 기록과 함께 재판장에게 인계하면서 답변서의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8조),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한 후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되,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거나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조)고 규정하여 3개의 사건처리 트랙(변론기일, 변론준비, 조정) 중 하나로서 '조정'을 정하고 있다.

15) 서울법원 조정센터의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으므로(민사조정법 제7조 제4항) 단독 또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10조 제3항 제2호는 조정위원의 사무로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을 받아 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을 규정하고 있다. 외부조정기관의 경우 조정실무 책임자를 총괄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정사건을 배정하고, 총괄조정위원의 책임하에 소속 조정위원을 통하여 조정사건을 처리한다. 조기조정사건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위원에게 조정사건이 배당된 날부터 진행하되, 당사자 쌍방이 원하면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조정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즉시 소송으로 이행함으로써 소송지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

16) 외부조정기관의 조기조정은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위원에게 민사조정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무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대한상사중재원,서울변호사회,대한법무사협회,공정거래조정원,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거래소 등에 조정사건을 회부하고 있다.

17) 정규상, "법원부속의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한 국민불만의 해소방안", 「법학논문집」, 중앙대, 23집 2호, 1999, p.141.

따라 당사자 사이의 솔직한 대화촉진을 통한 건설적 해결책(constructive resolution)을 모색한다.[18] 당사자들은 판사를 대면하기 전에 조정위원을 만나게 됨으로써, 부드럽고 협조적이며 자유스럽고 솔직한 분위기에서 맞춤형 조정을 시행하게 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법원은 조기사건관리방법의 하나로서 사건 초기에 실질적인 법원 부속형 · 연계형 조정을 함으로써 업무경감을 통한 변론충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조정회부 시기가 빠를수록 사건처리 기간도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조정 제공시점과 사건종국기간과의 관계 분석에 따르면, 조정이 사건진행단계 초기에 제공될수록 사건종국기간도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사건접수 후 90일 내에 조정이 제공된 경우 사건접수 후 종국까지 평균 150일이 걸렸는데, 사건접수 후 91-180일 사이에 ADR이 제공된 경우에는 사건접수 후 종국까지 평균 339일이 걸렸다.[19]

Ⅲ. 조정제도 운용상 고려사항

1. 조정의 실효성 여부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분쟁조정신청을 일종의 피해구제신청으로 의식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일종의 행정기관으로 생각하고 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이 강하다.[20] 행정형 ADR의 경우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러한 조정기관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21] 동종의 분쟁에 대해, 행정부서의 관할상의 문제로 복수의 조정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각종 행정형 ADR에서의

---

18) 정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제도 시범실시 중간보고서", 2010.8. 참조.

19) Bingham, et al, *"Dispute Resolution and the Vanishing Trial: Comparing Federal Government Litigation and ADR Outcome"*, 24 Ohio St. J. on Disp. Resol. 225 at 257-8, 2008-2009.

20) 유병현, "우리나라 ADR의 발전방향", 「안암법학」, 22호, 2006, p.298.

21) 행정형 ADR이은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에서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이다.
○ 행정기관 자체에 설치된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등.
○ 행정기관의 산하기관에 설치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의 무역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등.
○ 민간단체에 설치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의 결과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같은 경우와 사법상의 화해계약과 같은 경우로 나누어져 있고 통일성이 없다. 특히 행정형 ADR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입법적으로는 재판상 화해가 아닌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 즉 계약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22)]

행정형 ADR 기구가 실질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ADR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23)] 저작권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염려 없이 행정형 ADR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형 ADR을 신청할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4)]

조정이 성립된 경우 법률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당사자 간의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나뉜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가 없는 한 취소가 불가능하게 된다. 최근 입법동향도 대체로 당사자 간에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ADR 기구의 중립성·독립성이나 절차의 공정성·신중성이 재판절차에 준할 정도로 보장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동일한 것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정을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되는 협상절차라고 보는 많은 학자들의 시각에서 조정은 협상절차의 확장 또는 완성이라 표현한다.[25)] 조정절차에서 조정인은 결정을 내릴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장애요소를 극복하면서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정의 주된 특징은 당사자로 하여금 쌍방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규범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새로운 공유적 관계개념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조정인은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협상을 촉진시키고, 당사자의 잘못된 예측을 감소시키고, 당사자가 명확한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조정의 운용적 측면에서 조정인은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당사자 간에 논의를 촉진하고,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분쟁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22) 강수미, "재판외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반추", 「민사소송」, 제10권제1호, 2006, p.237.
23) 이강빈,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1호, 2008. 3, pp.24-26.
24) 김선정, "ADR을 통한 저작권분쟁해결에 관한 검토", 「중재연구」, 제21권 제2호, 2011. 8, p.97.
25) Christopher W. Moore, *"The Mediation Process: Practical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 2d. ed. Jossey-Bass Publishers, 1996, p.6.

제공하면서 당사자의 체면을 유지하여 주는 역할이 강조된다. 또한 조정인은 당사자가 분쟁에 대해 현실적 평가를 하도록 돕고, 당사자 간에 의사를 전달하여 주면서 요구와 필요를 구분하여 주고, 당사자에게 협상기술을 교육하는 자라고 하였다. 한편으로 분쟁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의 충분한 조사 및 법적 판단의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정 연구 인력으로 하여금 조정인을 보좌거나 상임 조정인을 지정하여 책임 있는 조정안을 도출, 권고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26]

2. 조정의 정보공개성 여부

조정의 성공은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를 전적으로 조정인에게 공개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해 조정인은 쟁점을 알 수 있고, 분쟁의 숨은 쟁점을 확인할 수 있고, 수렴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조정 중에 공개한 정보나 또는 양보를 했다는 사실이 조정이 실패한 후에 소송에서 공개되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면, 당사자는 조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공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조정에서는 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밀성을 보장할 것이 필요하다.[27]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정직한 정보공개가 필요한데 비밀성은 당사자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밝힐 수 있는 기본적 보장수단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8] 조정의 비밀성 보장은 분쟁당사자에 대한 공정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조정절차를 증거수집의 방법으로 생각하여 자신은 중요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정직하게 밝힌 사실을 이후 소송 등 절차에서 이용하는 것은 진실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불공평하다. 비밀성은 조정인의 중립성과 관련된다.

조정인의 법원에서의 증언은 그 자체로 일방당사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점은 불편부당한 중간자로서의 조정인의 기능과 신뢰를 실추시키게 된다. 조정의 당사자는 비공개, 즉 영업비밀보호나 사생활보호로 인해 조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정인과 조정프로그램의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만일, 조정인을 증인으로 자주 소환하게 되면, 조정인은 이후에는 조정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려한다. 조정에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

26) 특허청, "지적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p.134.
27) 서정일, 「국제상사중재법론」, p.55. 참조
28) Michael L. Prigoff, "*Toward Candor or Chaos: The Case of Confidentiality in Mediation*", 12 Seton Hall Legis. J. 1, 1998, pp.1-3.

는 점에서 쌍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만 효과가 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당사자가 신의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정의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사자합의를 유도하는 조정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29)]

법원조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으로 당사자에게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신의칙에 기하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면 당사자가 불성실하게 참여하였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지, 만일 그 결정자가 조정인이라면 조정인의 중립성과 비밀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3. 조정인의 중립성 여부

조정인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공평하여야 한다. 독립성은 조정인이 분쟁당사자 누구와도 경제적, 감정적, 심리적, 또는 명령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련성에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인은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은 조정인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 조정의 중립성은 일방이나 다른 사람을 편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조정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중립성은 독립성과 동등하게 평가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더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조정인이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편견이 없어야 하고, 조정인에게 결정권한이 없으며, 조정인은 구체적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조정 중에 일방당사자를 편들지 않아야 한다. 중립성의 개념 측면에서 조정인은 편견이 없어야 하는데, 조정인대부분은 분쟁에 대한 일종의 편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기에. 최소한 모든 조정인이 당사자간 분쟁을 우호적으로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조정인은 자신의 편견에 대해 자기평가가 필요하며, 그러한 편견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권한의 관점에서 조정인은 당사자에게 결정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일부 조정인은 조정 후에 남은 쟁점에 대해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는데(조정-중재), 이때 조정인 역할이 중재인 역할로 변경되면, 중립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조정의 구체적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자신들

29) 특허청, "지적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p.139. 참조

의 분쟁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조정에서의 성공이 사건 해결비율에 의해 평가된다면 조정인은 당사자들에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조정의 정당성과 공평성은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편견이나 편애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조정인은 일방 당사자를 편들어서는 안 되고, 편드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된다. 그러나 여전히 협상력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약자를 편들 수 있는지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조정인은 공평성과 함께 등거리성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30] 등거리성은 조정인이 모든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관점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인은 모든 당사자들을 공평하게 돕는 한 일시적으로 일방 당사자와 공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Ⅳ.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행정형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조정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하다. 행정형 조정이 활성화되려면 현재 난립해 있는 분쟁조정기관의 전문분야별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성과위주의 조정기관의 운영보다는 실체적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대외 신뢰구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한 조직의 강화나 영역의 확장만으로는 시대적 변화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자기모순에 직면할 수 있다. 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형 조정제도 하에서 조정전치주의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행정형 조정기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행정기관내에 조정기관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 절차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조정의 이점을 살려 민간단체에 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31]

2. 분쟁조정기구의 통합운영 방안

국내 · 국제적인 분쟁해결의 알선, 조정 경험이 풍부한 민간 분쟁해결기관에 각종

30) Janet Rifkin, Juan Mullen, Sara Cobb, "*Toward a New Discourse for Mediation: A Critique of Neutrality*", 9 Mediation Q. 151, 1991.
31) 함영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pp.28-29.

분쟁조정을 통합운영 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32] 새로운 상설적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함은 조정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 별도의 기관운영은 상당한 예산과 비용이 소요되는 방안이므로 충분한 조정수요의 존재 등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져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조정기관에 의한 조정의 효력인정은 최소한 당사자 합의의 성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민간조정에서는 법원이 민간조정절차로의 회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조정의 절차 및 내용 등 충분한 정보를 분쟁당사자에게 제공하여 민간조정절차로의 이행을 분쟁당사자에게 권유하고, 만약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면 민간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점차 민간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혹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민간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33] 조정이 실패할 경우 절차가 이중적으로 되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증가될 우려가 있는 반면 타협에만 치중할 경우 법과 원칙을 경시한 2급 정의(second-class justice)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 당사자의 자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자칫 강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조정제도의 법률적 정비를 서두르고 장기적인 조정 연구 및 보급을 위해서 현존하는 ADR 기관에 조정전담반을 두어 자질 있는 중재인 및 조정인을 양성하자는 견해도 상당 설득력있는 제안으로 제기되고 있다.[34]

3. ADR 제정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관의 분야별 정비 방안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한 분쟁의 해결, 간이·신속성, 경제성의 충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ADR 자체의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다.[35]

예를 들어, 인터넷분쟁과 관련한 분쟁조정은 유관기관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확충하여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상사분쟁과 관련한 분쟁조정은 무역·투자분쟁 및 국내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소비자와 관련된 분쟁은 그 대상범위를 넓게 조정하여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적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적 측면에서 ADR법을 제정하고, ADR 전문기관을 정비하는 것

32) 특허청, "지적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p.159.
33) 김상찬, "ADR기본법의 입법론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2004. 2. pp.169-170.
34) 장문철, "대체적 분쟁처리제도 도입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12, p.82.
35) 김정인, "중재활성화에 관한 고찰, 미국중재협회(AAA)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재」, 제314호, 2004, p.47.

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ADR 특성을 감안한 ADR 분쟁해결 총괄센터(ADR Control Center)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36]

4. 분쟁해결기구간 결합적 조정중재의 도입 방안

선행적 요건으로 조정의 풍부한 경험과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분쟁해결기관에 의한 제도운영이 필수적이기에 새롭게 통합 지정된 조정기관에 의한 운용이 효율적이다. ADR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재로 전환하는 조정중재(Med-Arb)는 제3자가 처음에는 조정인의 역할을 하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중재판정을 내리는 절충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37] 그러나 조정중재는 조정과 중재의 장점을 모두 갖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정이 실패로 끝나 중재판정을 내릴 경우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당사자들의 태도, 경제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타협적인 중재판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간의 결합적 조정중재방안으로는 분쟁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일차적으로 전문기관의 조정에 의해 해결하고, 조정이 결렬되면 분쟁당사자간 중재합의를 하여 법적인 판단을 요하는 중재로 연결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소송으로 다투는 불편과 경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그 실효성이 보장된다 하겠다.

V. 결 론

최근의 조정에 대한 국제적 추세는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어떤 부분과도 연계되어 유연한 접근방식을 취하여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분쟁해결의 다원화나 복잡성은 일반적인 양상으로 대두되어 조정은 대체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조정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로서는 일반 국민들이 조정제도의 존재를 잘 모르고, 또 법원이 아닌 민간에서 제공하는 조정에 대해 막연히 불안해하고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기인한다.

조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정제도의 존재와 장점을 일반 국민과 기업들에게 알리기 위한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조정인의 훈련 및 재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조정제도의 효용성을 꾸준히 홍보하는 노력을 경

36) 함영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p.196.
37)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제도 도입방안”, 2009. 12.31, p.22.

주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분쟁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소액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조정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조정을 제도적으로 활용 가능 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분쟁해결비용의 경감 차원의 보편적 견지에서 조정자체의 충실한 역할은 다중에게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선택에 대한 안목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조정전문가의 활용을 다각화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민간 조정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인증제도의 도입을 조속히 시행하는 정책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조정의 자주성, 다양성의 특성을 살려 조정 수행자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시효중단 등의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ADR 통합법을 서둘러 제정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강수미,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반추”,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김상수, “우리나라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성과와 발전방향”, 언론중재위원회, 2008.

김상찬, “ADR 기본법의 입법론에 관한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9. 12.

김선정, “ADR을 통한 저작권분쟁해결에 관한 검토” 「중재연구」, 제21권 제2호, 2011. 8.

김정인, “중재활성화에 관한 고찰, 미국중재협회(AAA)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재」, 제314호, 2004.

서정일, *“The Main Issue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s in Korea”,* 「중재연구」, 제21권 제2호, 2011. 8.

서정일, 「국제상사중재법론」, 두남출판사, 2003. 5.

유병현, “우리나라 ADR의 발전방향”, 「안암법학」, 22호, 2006.

윤지영,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및 싱가포르경영대학 중재과정 연수”, 대한상사중재원, 2011.

양병회, “ADR의 활성화를 위한 화해제도의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215호, 대한변호사회, 1994. 7.

장문철, “대체적 분쟁처리제도 도입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 12.

정규상, “법원부속의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한 국민불만의 해소방안”, 「법학논문집」, 23집 2호, 중앙대, 1999.

정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제도 시범실시 중간보고서”, 2010. 8.

최건호, “일본의 ADR제도”,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2006. 5.

함영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08.

특허청, “지적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9.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제도 도입방안”, 2009.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2009.

Bingham, et al, *Dispute Resolution and the Vanishing Trial: Comparing Federal Government Litigation and ADR Outcomes,* 24 Ohio St. J. on Disp. Resol. 225 at 257-8, 2008-2009.

Christopher W. Moore, *The Mediation Process: Practical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 2d. ed. Jossey-Bass Publishers, 1996.

Janet Rifkin, Juan Mullen, Sara Cobb, *Toward a New Discourse for Mediation: A Critique of Neutrality*, 9 Mediation Q. 151, 1991.

Michael L. Prigoff, *Toward Candor or Chaos: The Case of Confidentiality in Mediation*, 12 Seton Hall Legis. J. 1, 1998.

Michael Pryles, "Multi-Tired Resolution Clauses,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National Courts: The Never Ending Story", *ICCA International Arbitration Conference Congress series* No.10, Kluwer Law International, Piter Sanders, The Work of UNCITRAL o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Stephen J. War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st Group, 2001.

The Baker & Mckenzie, *International Yearbook,* Wolters Kluwer, 2008.

The Freshfields, *Guide to arbitration and ADR,* revised edition, Wolters Kluwer, 1999.

ABSTRACT

A Study for Active Plan for Integrating Mediation Systems

Jeong-Il Suh

This article focuses on integrating institutional mediation systems, especially the analysis of the leading ADR operation.

Mediation is a process in which an impartial third party, a mediator, facilitates the resolution of a dispute by promoting voluntary agreements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A mediator facilitates communications, promotes understanding, focuses the parties on their interests, and seeks agreement. These standards give meaning to this definition of mediation.

Standard mediation clauses are construed as broadly as possible, and mediation is compelled unless it may be said with positive assurance that the mediation process is not susceptible to an interpretation that covers the asserted dispute. Performing the conflicts check early in the process helps in eliminating any awkwardness or delays caused by making disclosures after mediation commences.

Mediator impartiality is central to the mediation process. A mediator should mediate only those matters in which she or he can remain impartial and evenhanded. If at any time the mediator is unable to conduct the process in an impartial manner, the mediator is obligated to withdraw.

Key Words : Mediation, Mediator, Mediation-Arbitration(Med-Arb) Claus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